



에미레이트
항공 여객운송약관

2012년 5월 10일 발행

(비고: 미국 내 지역에서는 다른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www.emirates.com/us/english를 참조하십시오)

에미레이트에서 항공운송 항공권이 발행되었다면 고객과 에미레이트 간에 운송 계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고객은 항공기로 여행할 권리를 갖게 되며, 계약 조건은 다음 사항에 의해 규정됩니다.

- 항공권 계약 조건
- 본 운송약관
- 해당 운임 및
- 당사 규정

목차 색인

제 1 조 - 본 약관에서 사용된 특정 표현의 의미	1
제 2 조 - 본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3
2.1 일반 사항	3
2.2 코드 세어	3
2.3 우선 법령	4
2.4 계약조건의 규정 우선	4
2.5 영어본 우선	4
제 3 조 - 항공권	4
3.1 일반 사항	4
3.2 유효 기간	5
3.3 미사용 항공권	5
3.4 항공편 쿠폰 사용 순서	6
3.5 항공권 교체	7
3.6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	7
제 4 조 - 운임, 세금, 수수료, 비용 및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할증금	7
4.1 운임	7
4.2 세금, 수수료 및 비용	8
4.3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할증금	8
4.4 화폐	9
제 5 조 - 예약	9
5.1 예약 요건	9
5.2 운임 지불 요건	9
5.3 개인정보	9
5.4 좌석	10
5.5 항공기	10
5.6 예약 재확인	11
5.7 계속 여행 구간 예약 취소	11
제 6 조 - 체크인과 탑승	11
제 7 조 - 운송 거부와 제한	12

7.1	당사의 운송 거부 권한	12
7.2	비용 상황	14
7.3	비행 적합성	14
7.4	임산부 여객과 신생아 운송	15
7.5	특별 보조	15
7.6	여객의 의료 비용 상황	16
7.7	동반인이 없는 어린이 탑승	16
7.8	기내 서비스	16
7.9	지상 서비스	17
7.10	무료 버스 이동	17
제 8 조 - 수하물		17
8.1	무료 수하물 허용량	17
8.2	초과 수하물	17
8.3	수하물에 담을 수 없는 품목	17
8.4	총기류 및 위험 품목	19
8.5	운송 거부 권한	19
8.6	검색, 검문, x-레이 권한	19
8.7	위탁 수하물	20
8.8	비위탁 수하물	20
8.9	위탁 수하물의 취합과 인도	20
8.10	동물	21
제 9 조 - 스케줄, 지연, 항공편 취소, 탑승 거부		21
9.1	스케줄	21
9.2	취소, 경로 재지정 및 지연 발생 시 구제책	22
9.3	탑승 거부	22
제 10 조 - 환불		23
10.2	비자발적 환불	23
10.3	자발적 환불	24
10.4	분실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	24
10.5	환불 거부 권리	24
10.6	화폐	26
10.7	항공권 환불의 주체	25
10.8	고객의 권리에 대한 제한	25
제 11 조 - 기내 탑승 시 품행		25
11.1	일반 사항	25
11.2	기내 알코올	26
11.3	금연 정책	26
11.4	의무의 위반	26
제 12 조 - 제 3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26
제 13 조 - 여행 서류, 세관 및 보안 검사		26
13.1	일반 사항	26
13.2	입국 거절	27
13.3	벌금, 구류 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여객 책임	27
13.4	압수된 여행 서류 반환	27
13.5	세관 검사	27
13.6	보안 검사	28
제 14 조 - 연결 항공사		28

제 15 조 - 손해 배상	28
15.1 해당 규정	28
15.2 책임의 범위	28
15.3 일반적 제한	28
15.4 여객 사망 또는 상해	29
15.5 수하물	30
15.6 여객 운송 지연	31
15.7 국제선 여객에게 적용되는 책임 제한에 대한 고지	31
제 16 조 - 수하물 인수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 수하물 인수 절차 및 모든 손해 소송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 ..	32
16.1 수하물 인수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	32
16.2 수하물 인수 절차	32
16.3 모든 손해 소송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	33
제 17 조 - 당사 규정	33
제 18 조 - 해석	33

제 1 조 - 본 약관에서 사용된 특정 표현의 의미

"당사", "당사의", "당사에게"라 함은 에미레이트를 의미합니다.

"고객", "고객의", "고객 자신"이라 함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기에 의해 수송될 수 있는 항공권을 소지한 모든 사람(성인, 어린이 또는 유아 여부 무관)을 의미합니다. "여객"에 대한 정의도 살펴보십시오.

"항공사 식별자 코드(Airline Designator Code)"라 함은 항공권, 시간표, 예약 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개별 항공편을 식별해 주는 2~3 글자를 의미합니다.

"조항"이라 함은 본 운송약관의 조항을 의미합니다.

"인가받은 대행사"라 함은 당사의 운송 서비스 영업 시 당사를 대신하도록 지정된 여객 영업 대행사(타 항공사 포함 가능)를 의미합니다.

"수하물"이라 함은 고객이 여행 중에 가져가는 고객의 개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수하물에는 고객의 위탁 수하물과 비위탁 수하물이 포함됩니다.

"수하물 확인증"이라 함은 위탁 수하물의 운송과 관련되며, 항공권에 포함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수하물 식별 태그"라 함은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당사가 발행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은행매도율"이라 함은 बैं킹 채널을 통해 자금의 이체 목적(즉, 은행 어음, 여행자 수표 및 유사 은행 문서 이외의 거래)으로, 은행이 교환 거래가 발생하는 국가의 화폐 단위와 교환하여 정해진 외화 금액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위탁 수하물"이라 함은 당사가 수하물 확인증이나 수하물 식별 태그 중 하나,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발행하여 항공기에서 당사가 보관하는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체크인 마감시간"이라 함은 체크인하고 탑승권을 수령하는 과정을 완료하도록 당사가 고객에게 정한 시간 제한을 의미합니다.

"운송약관"이라 함은 본 운송약관을 의미합니다.

"연결 항공권"이라 함은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발행한 2 매 이상의 항공권으로, 단일 운송약관을 형성합니다.

"쿠폰"이라 함은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고객 항공권의 일부로 발행한 종이 문서를 의미하며, "항공편 쿠폰(Flight Coupon)" 또는 "여객 쿠폰(Passenger Coupon)"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라 함은 기내 탑승 중이나 출발, 도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한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부상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항공 운송 중 발생한 수하물의 파손, 분실, 전체 또는 일부 파손 등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여객이나 수하물의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해 생긴 손해도 의미합니다.

"일"이라 함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수를 말합니다. 통지를 할 경우에 해당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공권의 유효 기간 산정을 위하여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자 항공권"이라 함은 당사의 예약 데이터베이스에 고객의 운송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는 전자 항공권 영수증/확인증(Itinerary)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 항공권 영수증/확인증"이라 함은 "여객 영수증/확인증(Passenger Receipt/Itinerary)" 또는 "확인증/영수증(Itinerary/Receipt)" 등의 문구가 표시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발행하여 이메일, 팩스, 인편, 우편 또는 택배 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항공편 쿠폰"이라 함은 여객이 운송될 출발지와 도착지를 표시하는 항공권의 일부로서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발행하는 종이 문서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 항공편에 대한 고객 예약을 기록하는 당사의 예약 데이터베이스 내 전자 입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이라 함은 고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타당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IATA"라 함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를 의미합니다.

"ICAO"라 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를 의미합니다.

"직계 가족"이라 함은 고객의 배우자, 자녀(입양 자녀 포함),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손자, 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 및 며느리를 말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이라 함은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 항공 수송과 관련해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몬트리올 협약(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을 말합니다.

"해당 국가 통화 가치"라 함은 보상액이 지불되거나 판결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자국 통화 가치에 해당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여객"이라 함은 항공권을 사용해 항공기로 여행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성인, 어린이 또는 유아 포함)을 의미합니다. "고객", "고객의", "고객 자신"에 대한 정의도 살펴보십시오.

"여객 쿠폰" 및 "여객 영수증"이라 함은 이러한 문구가 표시되고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고객 항공권의 일부로 발행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규정"이라 함은 제 17조에 자세히 설명된 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대한 당사의 특정 관점이 포함된 규칙을 의미합니다.

"SDR"이라 함은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미국 달러로 구성된 통화 바스켓인 복합 통화 단위인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을 말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공식 교환 단위로 사용됩니다.

"도중 체류지"라 함은 항공권의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지점에서 여행을 중단(체류 기간 무관)하기로 지정된 곳으로, 항공권이나 당사의 시간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태리프"라 함은 운송 운임 및 요금과, 정부 관계 당국에 제출(요구하는 경우)되는 관련 운송약관 및 항공권 제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항공권"이라 함은 함께 제공된 모든 쿠폰과 함께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발행하는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확인증(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 문구가 표시된 종이 문서 또는 전자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비위탁 수하물"이라 함은 위탁 수하물이 아닌, 고객이 비행기 내에 휴대하는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U.S.A."라 함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을 말합니다.

"US\$"라 함은 미국 달러를 말합니다.

"바르샤바 협약"이라 함은 고객 운송에 적용되는 아래의 국제법 중 적용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 항공 수송과 관련해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협약"
-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 몬트리올 추가 규약 번호 1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1975)
- 몬트리올 추가 규약 번호 2에 의해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1975)
- 몬트리올 추가 규약 번호 4에 의해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1975)
- 과달라하라 보충 협약(1961).

"웹사이트"라 함은 당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emirates.com을 의미합니다.

제 2 조 - 본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2.1 일반 사항

2.1.1 제 2.3 조에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본 운송약관은 고객과 당사 간의 계약을 구성하며 당사가 고객에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나, 해당 항공편이나 부분 항공편의 항공권 운송자란에 당사의 항공사 식별자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국 내 지역에서는 다른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www.emirates.com/us/english를 참조하십시오.

2.1.2 당사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당사 항공편에 체크인 한 경우, 또는 당사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당사 항공편에 체크인 한 경우, 고객은 예약한 본인과 예약된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1.3 본 운송약관은 고객 요구에 따라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나 당사의 관리자가 서명한 서면 문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2 코드 셰어

코드 셰어(Code Share)는 당사가 타 항공사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고객이 당사에 예약하고 "EK" 항공사 식별자 코드가 표시된 항공권을 하나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타 항공사가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휴 서비스가 고객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2.2.1 고객이 당사와 예약하는 경우 해당 시점에 타 항공사의 이름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인가받은 대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에는 인가받은 항공사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2.2.2 타 항공사에 의해 운항되는 코드 셰어 항공편에 있어, 해당 항공편의 운항과 절차 전반에 대해 해당 운항 항공사의 운송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당사의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하물 접수, 체크인 및 탑승, 운송의 거부와 제한, 기내에서의 행동, 스케줄, 항공편의 지연과 취소에 관한 조항은 본 운송약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 우선 법령

본 운송약관이 고객의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태리프나 법규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태리프와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본 운송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다른 조항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2.4 계약조건의 규정 우선

본 운송약관이 당사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본 운송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 규정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당사 규정의 다른 부분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2.5 영어본 우선

본 운송약관은 몇 가지 언어로 제공됩니다. 영어본과 비영어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영어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영어본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 3 조 - 항공권

3.1 일반 사항

3.1.1 당사는 유효한 항공권(해당 항공편에 대한 항공편 쿠폰, 항공권에 기록된 연속 항공편에 대해 미사용된 항공편 쿠폰 및 여객 쿠폰 포함)을 소지한 개인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각 승객에 대해 항공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항공권 영수증/확인증에 명시된 번호와 일치하는 일련번호가 적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1.2 전자 항공권의 경우, 고객의 전자 항공권 영수증/확인증 또는 여객 영수증을 당사와 공항 입국 및 보안 담당자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를 공항까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3.1.3 제시된 항공권이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조작된 경우, 또는 당사나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은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항공권 교체에 대한 내용은 제 3.5 조를 참조하십시오.

3.1.4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의 목적에 따라, 전자 항공권 영수증/확인증은 여객 항공권 및 수하물 운송 확인증/문서로 간주됩니다.

3.1.5 고객은 고객의 항공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항공권 미사용에 관한 상황은 제 3.3 조를 참조하십시오.

3.1.6 당사의 항공권 중 일부는 부분 환불이나 전액 환불되지 않는 특별 운임으로 판매됩니다. 고객은 이러한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보상받기 위해 적합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1.7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발행한 항공권은 항상 당사 자산이며 그 상태로 유지됩니다. 항공권이 타 항공사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타 항공사 명의로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의 자산으로 유지됩니다.

3.2 유효 기간

3.2.1 해당 항공권이나 본 운송약관, 태리프에서 달리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다음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3.2.1(a)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또는

3.2.1(b) 항공권 상에 기록된 첫 여행일로부터 1년. 단, 고객이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여행을 시작한 경우.

3.2.2 당사가 고객이 요청한 해당 시점에 예약을 확인할 수 없어 고객이 항공권 유효 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항공권에 포함된 제한 사항에 따라, 항공권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 10.3 조에 따라 고객에게 자발적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2.3 고객이 여행을 개시한 후 고객의 동행자가 당사 항공 여행 경로 중에 사망한 경우, 당사는 도중 체류지에서 최소 기간 동안 머물도록 요구하는 항공권 제한 사항을 포기하거나 고객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객의 항공권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2.4 고객의 직계 가족이 고객의 여행 개시 후 사망하는 경우, 당사는 도중 체류지에서 최소 기간 동안 머물도록 요구하는 항공권 제한 사항을 포기하거나 고객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사망일로부터 최대 45일 연장함으로써 고객의 항공권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사망 증명서나 당사에서 인정하는 대체 증거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3.3 미사용 항공권

3.3.1 고객이 여행을 개시하기 전이나 일부 항공권을 사용하기 전에 불가항력에 의해 여행하지 못하고 항공권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그 시점으로부터 12주 내에 고객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항공권을 고객이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임의 환불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당사에 제출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3.3.2 패키지 여행 및 패키지 투어(해당 국가 법률에 명시)에 대한 EU 위원회 지침 90/314(1990년 6월 13일)가 적용되는 휴가 패키지의 일부로서 제 3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항공권의 경우, 고객이 패키지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예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가 해당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는 고객이

모든 해당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타인에게 신규 항공권을 발행하여 고객의 항공권을 교체합니다.

고객의 항공권이 명시된 지침이 적용되는 패키지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권을 판매한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3.3.3 여행을 개시하거나 일부 항공권을 사용하기 전에 고객의 직계 가족이 사망하여 고객이 더 이상 여행을 원치 않는 경우, 고객은 제 10.2.1(a)조에 따라 환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사망 증명서나 당사에서 인정하는 대체 증거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환불은 불가합니다.

3.3.4 여행을 개시하거나 일부 항공권을 사용하기 전에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 당사는 요청이 있는 경우 10.2.1(a)조에 따라 항공권 환불을 산정하여 제공합니다. 유효한 사망 증명서나 당사에서 인정하는 대체 증거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환불은 불가합니다. 여행을 개시한 이후 고객이 사망한 경우 당사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 10.2.1(b)조에 따라 산정하여 항공권의 미사용된 부분에 대한 환불을 제공합니다. 유효한 사망 증명서나 당사에서 인정하는 대체 증거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환불은 불가합니다.

3.4 항공편 쿠폰 사용 순서

3.4.1 고객의 항공권은 출발지부터 도중 체류지를 경유하여 최종 도착지까지 항공권에 기록된 운송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항공편 쿠폰이 항공권에 명시된 순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항공권은 유효성을 상실하여 당사에서 보증하지 않습니다.

3.4.1(a) 항공권에 이미 지불된 요금이 항공편 쿠폰을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또는

3.4.1(b) 고객이 제 3.4.3 조에 지불 요구된 차등 운임을 지불한 경우,

3.4.1(c) 미 비행 구간에 대해 별도의 운임이 수납된 경우.

3.4.2 운송 유형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운임이 변경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예: 여행의 첫 구간을 비행하지 아니하여 출발지를 변경하거나 여행 방향을 뒤바꾸는 경우)에는 운임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운임은 항공권에 표시된 항공편과 날짜에 대한 운송에만 유효하며, 변경이 불가하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추가 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만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4.3 고객이 항공권에 기록된 여행을 변경(순서에 어긋난 항공편 쿠폰 사용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되는 항공편이 출발하기 전에 당사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변경된 여행에 대해 변경된 운임을 정산하여 신규 운임의 수락, 지불이나 고객 항공권에 기록된 여행의 유지에 대한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고객이 신규 운임을 수락하여 지불하기로 했을 때 항공권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행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이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당사는 운임 재산정 없이 다음 도중 체류지나 최종 도착지에 고객을 운송하도록 노력합니다.

3.4.4 당사에 통보 없이 제 3.4.3 조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고객이 일부 여행을 변경하거나 항공편 체크인 마감 전에 체크인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가 고객의 실제 여행에 대한 정확한

요율을 산정하고 고객이 항공권에 대해 기 지불된 운임과 바뀐 여행에 적용되는 운임간의 차액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미사용된 고객 항공편 쿠폰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규 운임이 기 지불된 운임보다 낮은 경우 당사나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는 적용되는 행정 수수료를 차감한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3.4.5 당사는 고객이 예약한 날짜와 항공편의 서비스 등급에 속하는 탑승용 항공권에 포함된, 각 항공권 쿠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항공권 발행 시점에 예약 없이 발행된 경우, 당사의 태리프, 적용되는 항공권 제한 사항 및 요청된 항공편에 대해 지불된 운임에 따른 공간 사용에 따라 좌석 공간이 차후 예약될 수 있습니다.

3.5 항공권 교체

3.5.1 고객 요청이 있고 제 3.5.2 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실 또는 손상되어 여행 시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항공권을 교체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항공편에 대해 유효한 항공권은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의해 정당하게 발행된 항공권인 경우에 한합니다.

3.5.2 제 3.5.1 조의 사유에 의해 항공권이 교체되기 전에, 고객은 제 3.5.4 조에 명시된 유형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해 당사에 배상하고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수수료를 교체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당사 또는 타 항공사 여부 무관)에 지불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의 실수나 태만으로 인해 항공권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5.3 해당하는 항공편에 대해 유효한 항공권이 정당하게 발행되었다는 증거가 없거나 고객이 제 3.5.2 조에 의해 요구되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교체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 여부 무관)는 기 지불된 운임의 환불을 조건으로 교체 항공권(지불된 운임 환불 대상) 운임을 전액 지불할 것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체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가 교체된 항공권이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합니다. 당사가 교체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인 경우 항공권 전액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항공권을 분실하여 교체할 때 원래 항공권을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찾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신규 교체 항공권을 발행한 항공사에 제출한 경우(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 여부 무관), 그 시기에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3.5.4 제 3.5.2 의 사유로 인해 고객이 서명한 상환 동의서의 금액은 원래 항공권에 대해 지불된 운임까지입니다. 이후 고객이 원래 항공권을 사용하거나 현금화한 경우, 고객은 적용되는 행정 수수료와 함께 고객에 연락/통지하여 동의를 구하는 데 든 당사 비용(법률 수수료 및 비용 포함)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3.6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과 주소

당사 이름은 항공권에 항공사 식별 코드로 "EK"라고 약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당사 주소는 Emirates Group Headquarters, Airport Road, P.O. Box 686, Dubai, United Arab Emirates 입니다.

제 4 조 - 운임, 세금, 수수료, 비용 및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할증금

4.1 운임

당사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항공권에 대해 지불된 운임에는 항공권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출발지 공항부터 명시된 도중 체류지를 경유하여 도착지 공항까지 고객 및 고객 수하물의 운송이 포함됩니다.

당사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운임에는 공항 간, 공항과 도시 터미널 간 지상 이동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공권에 대한 운임은 항공권 요금이 지불된 날짜에 따라 적용되므로 당사의 태리프에 따라 산정됩니다.

4.2 세금, 수수료 및 비용

4.2.1 고객은 여행 전에 정부나 기타 기관에서 당사에 부과하는 모든 적용되는 세금, 수수료 및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 여행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이를 수납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2.2 당사는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세금, 수수료 및 비용을 안내하며, 이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비행에 부과되는 세금, 수수료 및 비용은 당사의 통제 범위가 아니며 빈번하게 변경되고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이후 날짜에 부과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이후에 세금, 수수료 또는 비용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고객은 여행 전에 해당 세금, 수수료 또는 비용, 할증액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주거주지가 독일인 소비자의 자격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그리고 독일발 또는 독일행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2.3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로부터 구매한 항공권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 수수료, 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이 누락되어 이 항목을 전체 또는 일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 공항에서 관련 금액을 지불해야 고객 운송이 가능합니다.

4.2.4 세금, 수수료 또는 비용이 폐지되거나 감액되거나 고객 운송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 지불된 세금,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한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4.2.5 고객이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이 제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행정 수수료 차감 후 기 지불한 세금,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한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4.3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할증금

4.3.1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당사의 운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유형의 비용이나 금액이 제 3 자에 의해 당사에 부과(예: 보험료 추가 또는 민간 항공의 불법적인 방해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안 비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당사의 운영 비용(예: 연료비)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은 고객 운송으로 간주되는 모든 비용을 운임 할증료로서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권 발행일 이후에 부과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는 가능한 한 빨리 고객에게

연락하여 해당 운임 할증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고객 연락처를 통해 고객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체크인 시에 해당 운임 할증료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고객이 운임 할증료를 지불하지 않기로 하거나 제 10.2 조 조항에 따라 비자발적 환불을 받기로 한 경우, 당사는 고객에 대해 다른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4.3.2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할증료가 더 이상 운송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되지 않거나 보다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 기 지불된 해당 할증료와 관련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4.4 화폐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서 다른 화폐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예: 해당국 화폐의 불태환성), 운임, 세금, 수수료, 비용 및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할증료는 여행이 개시되는 국가의 통화로 지불되며, 지불된 일자에 유효한 해당 은행매도율(BSR)로 지불 국가의 화폐로 환전됩니다. 당사는 재량에 따라 해당 국가 법률에 따른 화폐로 지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 예약

5.1 예약 요건

5.1.1 일부 운임은 고객의 예약 변경 또는 취소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약 시점에 제공됩니다.

5.1.2 고객은 이륙, 착륙 또는 비행기 내에 머무는 동안 의료적 도움이나 특수 보조가 필요한 의료적 상황 또는 기타 상황(예: 제 7.3~7.5 조에 명시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약 시점에 당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 예약이 당사 시스템에 임시로 기록됩니다. 고객이 제 7.5 조에서 요구되는 의료적 사전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당사에서 인정하고 고객이 그러한 절차에 동반하는 모든 조항을 준수한 것(또는 준수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고객의 예약이 조건부로 당사 시스템에 등록되고, 예약 확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고객이 미국행 또는 미국발 여행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 규정이 적용되어 고객은 본 5.1.2 조에 명시된 요건을 전체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에 문의하시거나 http://www.emirates.com/us/english/plan_book/essential_information/special_needs.aspx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1.3 제 7.3 조~7.5 조가 고객에게 적용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사전 시한에 따라(즉, 제 7.3.2(a) 및 (b)의 경우 항공편 출발 48 시간 전 및 제 7.3.2(c)의 경우 항공편 출발 96 시간 전) 당사 콜 센터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의료적 사전 승인 절차 요건 준수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5.2 운임 지불 요건

당사는 고객이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명시한 발권 마감 시간 전에 항공권에 대해 적용되는 운임(적용되는 세금, 요금, 비용 및 할증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합니다.

5.3 개인정보

고객은 고객의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 포함)가 예약, 항공권 기록 및 발행, 탑승권 및 기타 고객 운송과 관련된 부수적 문서 발행, 고객의 일정 변경 통지, 고객의 문의 또는 요청 응대,

영수증 발행, 운송 서비스 제공, 휠체어 지원, 리무진 서비스 및 타사 서비스 등 고객 운송과 관련된 부수적 서비스, 회계 행정, 과금 및 감사 절차 및 기타 행정 목적, 신속한 입국 절차 진행, 바이오메트릭 사용 등의 신속한 세관 검사, 세관 대처, 입국 당국 대처, 보안 요건 준수, 범죄 예방과 탐지, 고객 관련 문제 처리, 통계 분석, 고객과의 향후 거래에 활용, 시스템 테스트, 시장 분석, 고객의 특정 여행 요구에 맞춘 마케팅 최적화, 벤치마킹 및 실적 측정, IT 유지 또는 개발 교육, 단골 승객 프로그램 운영, 고객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 해당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보안, 세관 또는 입국 등 고객의 여행과 관련된 정부 당국에 정보 열람 등을 위한 목적 및 고객의 운송과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기타 목적을 위해 당사에 제공되었음을 인지합니다.

고객은 위와 같은 모든 목적을 위해 당사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사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당사 사무소,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 기타 당사 관련 업체 및/또는 브랜드, 당사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 서비스(예: 자동차 대여, 호텔, 리무진, 환승, 부수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는 타사, 정부와 정부 기관, 신용 카드 및 기타 카드 결제 회사 및 타 항공사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 및 공유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마케팅을 위해 보유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먼저 고객의 허락을 받을 것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예: 고객의 건강 또는 장애, 종교, 범죄 기록 등과 관련된 정보)도 당사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당사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사가 위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타사에 공개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시행 중인 관련 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하여 때때로 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 저장 및 전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이를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어려운 국가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관적인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감시할 수 있도록 고객과의 전화 대화를 모니터링 및/또는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응급 상황시 연락할 수 있는 제 3자의 이름 및 연락처 세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공된 정보 공개에 대해 제 3자가 동의함을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고객의 개인정보 내용에 대해 문의 또는 정정을 원하는 경우 당사 지역 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5.4 좌석

당사는 선 좌석 요청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되, 특정한 좌석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고객이 기내 탑승 후 언제라도 유사한 좌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5 항공기

5.5.1 당사는 시간표에 명시된 (또는, 항공권 발행 시점에 명시된)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고자 노력하되, 특정 항공기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당사는 운영, 안전, 보안 상의 이유나 다른 이유 여부에 따라 고객을 운송할 항공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5.2 때로 당사를 위해 운행하는 타사 항공기로 항공편을 임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운송할 항공기에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항공기 운영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거나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이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이 원래

예약한 항공편에 광고된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기내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수하물 허용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이러한 사항이 항상 가능하다고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5.6 예약 재확인

5.6.1 제한된 예외 사항에 따라, 고객은 비행 전에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의 비행 전 예약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재확인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5.6.2 당사의 예약 재확인 요청에 고객이 응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고객의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을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항공편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한, 당해 취소된 예약과 관련한 운임 환불은 불가합니다.

5.6.3 당사의 예약 재확인 요청에 고객이 응하지 못하여 예약이 취소된 후, 예약이 취소된 항공편에 좌석이 있고 고객이 계속해서 여행하기를 원하면 당사는 예약을 다시 설정하여 고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에 좌석이 없는 경우 당사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 도착지나 최종 도착지로 당사의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여 고객을 운송하고자 노력하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5.6.4 고객의 운송에 타 항공사가 포함된 경우 해당 항공사의 예약 재확인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항공권상에 입력된 항공사 식별자 코드에 해당하는 항공사에 예약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객이 재확인 요구에 응하지 못하여 타 항공사가 예약을 하나 이상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계속 여행 구간이나 환불에 대한 권리는 타 항공사의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5.7 계속 여행 구간 예약 취소

5.7.1 고객이 먼저 당사에 알리지 않는 한, 고객이 항공편을 체크인하지 않거나 체크인은 했으나 체크인 시 당사에 의해 명시된 마감 시간 내에 탑승 게이트에서 탑승권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고객의 예약 중 미사용된 부분을 취소합니다.

5.7.2 관련 항공편에 대해 체크인이 종료되기 전이나, 체크인 절차가 완료되고 탑승 게이트가 닫히기 전에 예약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의 의향을 당사에 알린 경우, 당사는 제 5.7.1 조에 의거하여 고객의 미사용된 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5.7.3 제 5.6 조 및 5.7 조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당사는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 체크인과 탑승

6.1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로 여행 중인 경우 고객은 늦어도 예정된 항공편 출발 1 시간 30 분(90 분) 전까지 체크인을 위해 도착해야 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 중인 경우 고객은 늦어도 예정된 항공편 출발 3 시간 전까지 체크인을 위해 도착해야 합니다.

6.2 체크인 마감 시간은 공항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는 고객의 최초 항공편에 대한 체크인 마감 시간이 제 6.1 조에 명시된 통상적인 제한 시간보다 긴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려 드립니다. 후속 항공편에 대해서는 시간표를 참고하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문의하여 체크인 마감 시간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6.3 고객은 적용되는 체크인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이 체크인 마감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체크인 마감 시간이 표시되지 않아 고객이 체크인 마감 전에 체크인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예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5.7 조도 참조하십시오.

6.4 고객은 체크인 시점에 당사가 명시한 시간 내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야 합니다. 해당 마감 시간 이후 도착시 운송이 거절되고 위탁 수하물은 항공기에서 하기(下機) 조치됩니다. 제 5.7 조도 참조하십시오.

6.5 고객이 제 6 조를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 운송 거부와 제한

7.1 당사의 운송 거부 권한

제 7.1.1 조~제 7.1.21 조에 열거된 사건이 하나 이상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이나 고객의 수하물을 항공편으로 운송할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는 당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고객에게 문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운송 거부 결과와 관련된 제 7.2 조 및 제 10.5.4 조, 그리고 고객에 제 7.1 조 적용과 관련된 제 18 조를 참조하십시오.

7.1.1 적용되는 정부 법규, 규정, 명령이나 정부 정책의 준수를 위해 운송 거부가 필요한 경우,

7.1.2 체크인 도중, 또는 항공편 탑승 운영 중이거나, 연결 항공편에서 내리는 중이나 이륙 전 기내에서의 여하한 운영 중에 고객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7.1.3 지상 요원이나 승무원의 안전 또는 보안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7.1.4 항공편 탑승 운영 중, 연결 항공편에서 내리는 중이나 이륙 전 기내에서의 여하한 운영 중에 지상 요원, 승무원 또는 여객을 포함하는 사람에게 위협적, 학대적,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7.1.5 고객 및/또는 고객의 수하물 운송으로 인해 항공기나, 다른 여객, 승무원의 안전, 건강, 보안 또는 기내 타 여객의 편안한 여행이 위험에 처하거나 이에 부정적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7.1.6 고객이 알코올이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7.1.7 고객이 예약하거나 여행하기로 동의한 등급으로 여행할 때 알코올 또는 약물로 인한 장애를 포함하여, 고객의 신체, 정신적 상태가 고객 자신, 여객, 승무원, 항공기 또는 기내의 사람이나 재산을 위협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기내 타 여객에 중대한 불편이나 불안을 끼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러한 모습이 실제로 보이는 경우. 미국발 또는 미국행 여행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 규정이 적용되어 제 7.1.7 조에서 명시된 일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에 문의하시거나 http://www.emirates.com/us/english/plan_book/essential_information/special_needs.aspx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7.1.8 고객 자신이나 수하물에 대한 보안 확인증 제출을 거절하거나 제출 과정 중 체크인 또는 탑승 게이트에서 보안 관련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하거나 보안 정보

평가/분석에 문제가 있거나 수하물의 보안 봉인이나 탑승권의 보안 스티커를 조작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7.1.9 착석, 미워탁 수하물의 보관, 흡연, 알코올 섭취, 약물 사용 또는 전자 기기 사용(예: 이동/휴대 전화, 노트북, PDA,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CD, DVD 및 MP3, 전자 게임 또는 전송 기기) 등에 관한 당사의 안전, 보안 또는 여객 편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1.10 폭탄 소동, 비행기 납치 위협 또는 기타 보안 위협을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경우

7.1.11 고객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 세금, 수수료, 비용이나 예외 상황에 의한 할증료 전액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7.1.12 당사의 독점적 판단에 따라, 고객이 필수 사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유효하거나 합법적으로 획득한 여행 문서가 없거나 부정적인 수단에 의해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유효한 여행 문서나 필수 사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환승을 통해 한 나라에 입국/여행하려 하거나 기내 또는 체크인 및 탑승 중 여행 문서를 파손하거나 여행 문서를 당사가 복사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영수증과 함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승무원에게 여행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7.1.13 유효한 여행 문서를 소지했음에도 목적지 국가, 환승 의사가 있는 국가 또는 중도 체류지로 계획된 국가의 입국 당국 또는 기타 당국으로부터 고객의 입국 불허 연락을 당사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은 경우

7.1.14 정부 당국이 합법적으로 당사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고객의 소지품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절하거나, 고객이 제출한 당해 정보가 허위 또는 오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1.15 고객이 제출한 항공권이 불법 또는 부정한 수단(예: 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으로 획득된 것으로 보이거나 위조, 변조 또는 필수적인 당국의 허가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 이외의 주체에서 구매 또는 발행되었거나 훼손, 분실, 도난 중인 것으로 당사에 신고되었거나 위조권이거나 자신이 항공권에 기명된 본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연속 항공편 쿠폰의 사용 등에 관한 제 3 조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7.1.16 고객이 비행에 대한 의료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제 7.3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7.1.17 고객(고객이 어린이인 경우 법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제 7.7 조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7.1.18 고객, 또는 고객이 책임지고 함께 동반하는 사람(어린이, 유아 등)이 관할법규, 법원 명령, 보석 조건에 의해 비행기 출발지 관할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7.1.19 고객이 약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타당하게 그러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7.1.20 고객이 위에서 금지한 항목을 이전에 했고 당해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거나 고객 행동과 관련한 여하 이유로 이전에 타 항공사가 의해 운송을 거절당했거나 당사를 통한 이전 여행 시, 제 11.1 조에서 부과된 의무를 위반했던 경우

7.1.21 통지일 후 언제라도 당사의 항공편으로 고객을 운송하지 않겠다고 고객에게 통지하는 경우.

7.2 비용 상황

제 7.1 조에 명시된 여하한 이유에 따라 운송이 거부된 경우 고객은 (a) 고객에 의해 분실, 손상 또는 파손된 자산의 수리 또는 교체 (b) 고객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여객이나 승무원에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상액 및 (c) 고객 및/또는 고객의 수하물을 옮기기 위해 비행기가 지연되는 등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당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항공권에서 미사용된 운송 금액 또는 당사가 보관하는 고객 자금에서 위 금액이나 비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7.3 비행 적합성

7.3.1 운송을 위한 항공기 탑승 전에 고객은 의료적으로 비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타당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이 특정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비행할 수 있는 경우 비행 도중과 전/후에 모든 당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 책임입니다. 본 운송약관에서 요구된 고객의 비행 적합성에 대한 서면 증빙을 제시하는 것도 고객 책임입니다. 비행 적합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면 미국발/미국행의 경우 제 7.3.2 조와 7.5 조, 7.3.4 조를 참조하십시오.

7.3.2 고객이 제 7.3.2(a)~(c)항에 명시된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행 적합성에 의심 가는 점이 있으면 운송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단, 미국행/미국발 비행인 경우 고객은 해당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7.3.4 조를 참조하십시오.

7.3.2(a) 비행 전 최소 10 일 전 날짜가 명시되고 고객이 여행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편에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작성한 의료 보고서를 최소한 비행 48 시간 전까지 당사에 제출하는 경우

7.3.2(b) 고객이 의료 정보 양식(MEDIF - 최근의 질병, 치료, 수술로 인해 고객의 비행 적합성에 의심이 갈 경우 가장 유용함)을 최소한 비행 48 시간 전까지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당사가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

7.3.2(c) 고객이 단골 고객 의료 카드(FREMEC - 영구적, 만성적 질병이나 장기 의료적 치료가 요구되어 고객의 비행 적합성에 의심이 갈 경우 가장 유용함)를 최소한 비행 96 시간 전까지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당사가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

7.3.3 당사가 보기에 다음과 같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소한 비행 48 시간 전까지(또는 당사의 절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더 짧은 기한) 당사 의료 담당 부서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미국행/미국발 비행인 경우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미국 규정에 관한 제 7.3.4 조 참조). 19 자세한 정보는 당사에 문의하시거나 http://www.emirates.com/us/english/plan_book/essential_information/special_needs.aspx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7.3.3(a) 타 여객이나 승무원에 위험한,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3.3(b)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평안과 편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신체적 상태를 유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경우

7.3.3(c) 비행의 안전에 잠재적 위해를 끼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7.3.3(d) 경로 전환이나 예정에 없는 비행 중단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7.3.4 고객이 미국행/미국발 여행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 규정이 적용되어 제 7.3.2 조 및 7.3.3 조에 명시된 요건을 전체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요건의 차이점에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7.4 임산부 여객과 신생아 운송

7.4.1 고객이 임산부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기입되고 임신 상태가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사나 조산원이 서명한 의료 보고서나 문서를 당사에 제시한 경우에 한해 28 주차 이후 임산부를 운송합니다. 당해 보고서 또는 문서에는 고객이 여행에 적합하다고 예상되는 가장 늦은 날짜도 기입해야 합니다.

7.4.2 임신 합병증이 있는 경우, 고객은 언제든지 여행전에 당사 의료담당부서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생아 임산부의 경우 임신 36 주 이후에는 당사 의료 담당 부서로부터 사전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쌍둥이나 세 쌍둥이 등의 임산부의 경우 임신 32 주 이후에는 당사 의료 담당 부서로부터 사전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7.4.3 제 7.4.1 조가 고객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고객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당시의 임신 상태에 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그 결과로 고객이 기내 의료적 도움을 요구하거나 고객의 의료 보조를 위해 해당 항공편이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제 7.6 조 요건에 따라 그에 명시된 비용 유형이 당사에 발생한 경우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7.4.4 생후 8 일 이하의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탑승되지 못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7.5 특별 보조

7.5.1 고객이 스스로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거나 도움 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거나 도움 없이 기내 객실을 돌아다니거나 대피할 수 없거나 특수 장비가 필요해 특별 도움을 받아야 경우, 당사는 고객이 발권 시점에 당사 의료 담당 부서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고 모든 관련 시점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고객을 운송합니다. 미국행/미국발 비행인 경우 고객은 해당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7.5.5 조를 참조하십시오.

7.5.2 제 7.5.1 조 또는 7.5.4 조에 의거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고객의 특별 보조 요건이 부정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고객은 비행 전에 당사의 의료 담당 부서 또는 고객의 의사로부터 신규 승인을 받고(제 7.5.4 조에 의거) 모든 관련 시점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5.3 고객이 제 7.5.1 조에 의거하여 당사 의료 담당 부서로부터 운송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객의 특별 요구 때문에 이후 운송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이 제 7.1 조 및 7.3 조 등을 포함하여 본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7.5.4 제 7.5.1 조 및 7.5.3 조의 목적에 따라, 당사 의료 담당 부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고객이 비행 중 특수한 의료 보조(예: 음식물 섭취, 화장실 사용, 기내 대피 또는 고객 자신에 약물 복용 또는 치료를 위한 보조)를 요하지 않고 운송을

완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고객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는 원본 증명서를 발권 시점에 당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7.5.5 고객이 미국행/미국발 여행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 규정이 적용되어 고객은 본 7.5 조에 명시된 요건을 전체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에 문의하시거나

http://www.emirates.com/us/english/plan_book/essential_information/special_needs.aspx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7.6 여객의 의료 비용 상황

탑승 전에 이미 내재된 건강 상태나 임신으로 인해 기내에서 아프게 된 경우(고객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무관), 고객은 기내 처치, 지상 운송 또는 제 3 자가 제공한 치료에 대해 당사가 지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이 제 7.3 조, 7.4 조 또는 7.5 조를 위반한 경우 고객의 의료 보조를 위한 항공기 경로 변경에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으로 인해 발생한 당해 비용 지급을 고객 항공권에서 미사용된 운송 금액, 고객 계정에서 미사용된 크레딧 또는 당사 보관 중인 고객 자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7.7 동반인이 없는 어린이 탑승

7.7.1 비행 개시일에 5 세 미만이거나 18 세 이상의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인 경우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탑승인이 5 세에서 16 세 사이인 경우 당사가 동반인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여행 7 일 전까지 당사가 이에 대한 통지를 받고 추가 요금이 지불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7.7.2 탑승인이 5 세 이상이나 비행 개시일에 12 세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으면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7.7.2(a) 고객의 기내 탑승 전 및 공항 이륙 전까지 할당된 당사 요원과 함께 고객을 책임지고 공항에 머무르며 도착지 공항 또는 도중 체류지 공항에서 다른 부모, 후견인 또는 고객을 책임지는 성인(해당인의 신원에 대한 전체 세부 정보 제출)에게 고객이 인도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객을 책임지는 부모, 후견인 또는 성인을 체크인 시에 동반해야 함.

7.7.2(b) 고객이 항공편 예약을 확인하였고 해당 항공편이 도착지 이외의 장소에서 종착하거나 날씨 또는 기타 운영상의 상황으로 인해 여타 다른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중단이 있을 것으로 당사에 의해 예상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7.7.2(c) 고객을 책임지는 부모, 후견인이나 성인이 중도 체류 전체 기간 동안 고객을 만나고 책임을 맡지 않는 한, 공항의 경로 변경 또는 예정된 도중 체류 시간이 두바이 국제공항의 경우 8 시간, 여타 다른 공항의 경우 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7.8 기내 서비스

운영상의 이유로 당사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장비 제공 및 광고된 프로그램, 광고된 특별 기내식 또는 여타 다른 형태의 기내식 또는 광고된 기내 서비스 제공에 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 기내식은 변동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유는 당사 주문에 따라 제 3 자가 당해 기내식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기내식에 견과류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으며 기내 탑승 환경상 견과류나 견과류 제품이 없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7.9 지상 서비스

당사는 빠른 트랙 서비스, 공항 라운지 및 라운지 내 제공되는 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항 지상 서비스와 장비 제공에 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발/미국행 비행의 경우, 해당 국가 규정이 적용되어 특정 장비와 지상 서비스가 특별한 보조가 필요한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에 문의하시거나

http://www.emirates.com/us/english/plan_book/essential_information/special_needs.aspx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서비스는 변동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유는 당사 주문에 따라 제 3 자가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제 3 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 12 조를 참조하십시오.

7.10. 무료 버스 이동

당사가 제공하는 고객의 출발지/도착지 공항에서 또는 공항을 향한 무료 버스 이동은 (“서비스”) 다음과 같은 조항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됩니다.

7.10.1. 당사는 “서비스” 운영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분실, 손해, 비용과 경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으로 인해 고객이 항공편을 놓치는 경우);

7.10.2. 당사는 고객의 사망이나 부상이 당사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고객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서비스”중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7.10.3. 당사는 고객이 “서비스”중 발생한 파손/분실이 당사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수하물의 파손이나 분실(도난이나 절취를 포함하여)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하물의 파손, 분실, 도난 또는 절취가 당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고객이 증명할 경우, 당사의 책임은 Kg 당 US\$20 으로 제한됩니다.

제 8 조 - 수하물

8.1 무료 수하물 허용량

고객은 일부 수하물을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크기 제한 사항은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 영수증/확인증에 표시되며 비행일에 적용되는 당사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나 당사 규정 문서는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요청해 주십시오.

8.2 초과 수하물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 운송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도우미 동물이 아닌 한, 동물이 담긴 운반용기에 대해서도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초과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8.3 수하물에 담을 수 없는 품목

8.3.1 수하물에 담을 수 없는 특정 품목이 있습니다. 위탁 및 비위탁 수하물 모두에 적용되는 금지 사항, 위탁 수하물과 비위탁 수하물에 개별적이거나 추가로 적용되는 금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이 적용되는 여하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객 및/또는 고객 수하물은 운송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 8.5.1 조 참조). 또한 금지 품목이 수하물에 잘못 포함되어 손상을 입거나 다른 수하물을 손상시키는 경우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 15.5 조 참조).

8.3.2 고객은 비위탁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에 다음과 같은 품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8.3.2(a) 위험물의 항공 안전 수송을 위한 ICAO 기술 지침, IATA 위험 물품 규정 및 당사 관련 규정에 명시된 내용 등, 항공기나 기내 승객, 자산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 당해 규칙 및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주십시오.

8.3.2(b) 비행 출발 국가 또는 입국 국가의 적용되는 법규, 규정, 명령, 정책에 의해 운송이 금지되는 품목.

8.3.2(c) 위험성이나 불안정성, 중량, 크기, 형태나 특성상의 이유로 운송에 부적합한 것으로 당사가 고려하는 품목 또는 운항 항공기 기종 등과 관련하여 파손되기 쉽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 수하물 운송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항 도착 전에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8.3.2(d) 16 세 미만인 어린이가 동반자 없이 탑승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이 요구되는 품목.

8.3.2(e) 전쟁 물품. 전쟁 물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8.3.3 고객은 파손되기 쉽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 귀중품(금전, 보석, 귀금속 포함), 컴퓨터, 개인용 전자기기류, 저장된 데이터, 기내 또는 여행 중에 필요하며 분실되거나 손상되면 신속히 교체 불가능한 약품 또는 의료 장비, 집이나 차 열쇠, 중요 문서(비즈니스 문서, 여권 및 기타 신원 확인 문서, 협상 문서, 유가 증권 등) 또는 샘플은 위탁 수하물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8.3.4 고객은 다음을 비위탁 수하물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8.3.4(a) 실제/복제 또는 장난감 무기, 총기 및 탄약, 폭발물 또는 폭발물이 포함된 것(크리스마스 폭죽통, 불꽃놀이 또는 폭죽통 등) 및 방화 물질, 모든 종류/유형/형태나 크기의 칼, 편지 뜯는 칼, 금속 날붙이, 석궁, 새총, 면도날, 일자형 면도날(안전 면도 및 카트리지 날 제외), 숙련공 공구, 다트, 가위, 손톱 줄칼, 피하 주사 바늘 및 주사기(의료적 이유로 인해 해당 품목을 운송해야 한다는 의료 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뜨게질 바늘, 코르크 따개, 스포츠용 배트와 클럽(야구 및 소프트볼 배트, 골프 클럽, 크리켓 배트 등이 포함되나 테니스, 배드민턴 및 스쿼시 라켓 제외), 딱딱한 스포츠용 공(크리켓, 필드 하키 또는 당구, 스누커 또는 포켓볼 공), 당구, 스누커 또는 포켓볼 큐대, 무술용 장비.

8.3.4(b) 당사 또는 공항 보안 요원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기타 보안 또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되거나 개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8.3.5 비위탁 수하물 품목을 위탁 수하물에 넣은 경우(고객 요청이나 당사 요구 여부에 무관) 고객은 즉시 제 8.3 조에 의해 위탁 수하물에 포함할 수 없는 품목을 모두 빼내야 합니다. 고객이 다른 가방이 없어 당사에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최선을 다하여 수하물 가방을 제공합니다. 단, 고객이 제 8.8 조에 명시된 비위탁 수하물의 내용, 크기 및 중량과 관련한 당사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품목들을 비위탁 수하물로서 휴대할 수 있습니다.

8.3.6 당사는 위탁 수하물 또는 비위탁 수하물에서 빼내어 공항 보안 요원이 맡은 여하 품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행 전 고객의 항공편과 출발 공항에 적용되는 보안 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공항 보안 요원이 수하물에서 개인 물품을 빼낸 경우 공항 보안 요원에게서 영수증을 받고 당해 품목을 취합하여 수습하는 것은 고객 책임입니다.

8.4 총기류 및 위험 품목

8.4.1 고객이 폭발물이 포함된 품목(크리스마스 폭죽통, 불꽃놀이 또는 폭죽통 등) 등 총기류, 탄약 및 폭발물을 위탁 수하물로 휴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알아보고 운송 개시 전 출발 국가 및 도착 국가의 정부 당국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허가를 받고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고객 책임입니다.

8.4.2 비행 3일 전까지 당사의 승인이 없는 한, 폭발물이 포함된 품목 등 총기, 탄약 및 폭발물(크리스마스 파티용 폭죽통, 불꽃놀이 또는 폭죽통 등)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에 허용된 총기류는 안전 장치를 작동시켜 탄약을 빼고 적절하게 포장하여 출발 국가, 도착 국가 및 여타 도중 체류지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탄약 운송에는 제 8.3.2(a)조에 명시된 대로 ICAO 및 IATA 규정이 적용됩니다. 총기류, 탄약 및 폭발물은 항공기의 객실이나 조종실에서 일체 운송하지 않습니다.

8.4.3 골동품 총기류, 도검, 칼, 장난감 또는 복제 총, 활과 화살 및 유사 무기류는 사전 승인을 전제로 당사 재량에 따라서만 위탁 수하물로 접수되나, 항공기 객실이나 조종실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8.4.4 제 8.4.2 조 및/또는 제 8.4.3 조에 의거해 허용된 품목 중, 위탁 수하물에서 빼내어 보안 요원, 정부 직원, 공항 직원, 경찰 또는 군인, 기타 고객 운송과 관련된 타 항공사가 맡거나 파손된 품목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8.5 운송 거부 권한

8.5.1 당사는 제 8.3.2 조(비위탁 수하물의 경우 제 8.3.4 조)에 설명된 품목의 존재를 당사에 말했거나 당사의 확인 여부나 그 시점에 관계없이 이러한 품목이 포함된 수하물 운송을 거부합니다. 제 8.3.1 조도 참조하십시오.

8.5.2 당사는 크기, 형태, 외관, 중량, 내용물, 특성상의 이유이든 안전 또는 운영상의 이유이든 타 여객의 편의를 위한 이유이든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하물 운송 수락을 거부합니다. 특정 품목의 운송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로부터 안내를 받으십시오.

8.5.3 당사는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하물 운송 수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 요청하면 허용되는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8.6 검색, 검문, x-레이 권한

8.6.1 안전, 보건 및 보안상의 이유로, 또는 본 운송약관에 의해 금지된 품목이 수하물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는 수하물을 검색, 검문하고 x-레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앞에서 수하물 검색을 위해 노력하되,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고객 부재 중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당해 모든 검색, 스캔 및 x-레이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 및 수하물 운송을 거부합니다.

8.6.2 고객은 정부 직원, 공항 직원, 경찰 또는 군인 및 고객 운송과 관련된 타 항공사가 수하물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8.6.3 검색, 검문 또는 x-레이 과정에서 수하물이 손상되었을 때 당사의 부주의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당사는 그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8.6.4 일부 국가의 보안 당국은 위탁 수하물을 여객이 없을 때 손상 없이 열 수 있는 방법으로 잠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해 요건을 고객 자신이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고객 책임입니다.

8.7 위탁 수하물

8.7.1 고객은 위탁 수하물 겉에는 물론 각 내부 품목에 이름, 전체 주소, 당사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번호가 포함된 태그를 단단히 달거나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8.7.2 위탁 수하물을 체크인할 때, 당사는 각 위탁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 태그를 부여합니다.

8.7.3 위탁 수하물은 통상적으로 고객과 같은 항공기로 수송되나, 가끔 타 항공기로 수송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안전, 보건, 보안, 운영상의 이유 또는 위탁 수하물의 크기나 중량, 또는 본 운송약관의 관련 부분 미준수). 다른 항공기로 위탁 수하물을 수송하는 경우 당사는 타 항공기로 위탁 수하물을 운송할 때 관련된 통관절차를 위해, 또는 수하물 크기나 중량 관계로 타 항공기로 운송된 이유로, 또는 본 운송약관 관련 부분 미준수로 인해 취합지 법규상 고객이 도착지 공항에 출석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한 주소로 이를 양도합니다.

8.7.4 당사가 위탁 수하물을 고객 수송 항공기와 동일한 항공기로 운송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고객 수하물을 실은 항공기에 고객이 탑승하지 못하거나 탑승 후 이륙 전이나 환승 시점에 기내를 떠나 재탑승하지 않으면 위탁 수하물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8.7.5 당사는 비행기 내에 적절한 공간이 있고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초과 비용을 고객이 지불하는 경우 고객 운송 항공기와 같은 항공편으로 고객의 초과 수하물을 운송합니다.

8.7.6 고객은 위탁 수하물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혹독한 항공 운송 환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충분히 튼튼하고 손상(적정한 정도의 마모 및 찢김 예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잠궈야 합니다.

8.8 비위탁 수하물

8.8.1 당사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비위탁 수하물에 대한 최대 크기 및/또는 중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모든 비위탁 수하물은 고객 앞 좌석 아래 또는 항공기 객실의 머리 위 수납 칸에 맞는 크기여야 합니다. 비위탁 수하물이 너무 커서 이런 방법으로 보관하기 어렵거나 중량이 과도하거나 여타 이유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 체크인해야 하며 다른 위탁 수하물로 인해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제 8.2 조에 의거해 초과 수하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8.8.2 고객이 비위탁 수하물로 운송하고자 하는 고가의 귀중품, 악기 또는 외교 문서를 담은 행낭이 비위탁 수하물의 크기나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여행 중에 휴대하여 보관하도록 허용된 당해 품목을 보관할 목적으로 고객 운송 항공기와 같은 등급의 좌석(있는 경우)을 하나 이상 구매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비위탁 수하물에 대한 당사의 크기나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여하한 품목은 비위탁 수하물로 운송하지 않습니다.

8.9 위탁 수하물의 취합과 인도

8.9.1 제 8.7.3 조에서 위탁 수하물을 고객에 인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도착지 또는 중도 체류지에서 가능한 한 즉시 위탁 수하물을 취합해야 합니다. 타당한 시간 이내로 취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개월 넘게 도착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찾아가지 않은 위탁 수하물은 당사가 고객에게 통지나 책임 없이 이를 처분하여 그 수입을 당사 수익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8.9.2 수하물 확인증 및 수화물 식별 태그를 소지한 사람만이 위탁 수하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하물 확인증 및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지한 사람의 신원이나 권한을 확인하거나 취합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책임은 없습니다.

8.9.3 위탁 수하물을 찾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수하물 확인증 및 수화물 식별 태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람은 취합 허용 전에 수하물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사는 취합 권리를 평가할 때 수하물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된 질문 이외에 어떤 것도 질문할 책임이 없습니다.

8.10 동물

고객이 신청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고 다음 조건 모두와 당사의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당사는 동물 운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10.1 모든 적용되는 법적 요건에 따라 항공기 내 화물에 운송하려면 적절한 용기에 적절한 나무 상자를 만들어(필요한 물과 음식 포함) 동물을 넣어야 합니다.

8.10.2 동물과 함께 올바른 건강 상태 및 백신 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증, 환승 허가증, 출국 허가증 및 도착지, 입국지, 환승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를 갖추어 당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8.10.3 도우미 동물이 아닌 한, 고객은 동물을 넣은 용기에 적용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8.10.4 동물 운송이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의 부주의만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실, 상해,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8.10.5 제 8.10.2 조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확인증과 허가증을 갖추지 않고 당사에 의해 동물이 운송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필요한 확인증이나 허가증이 없는 결과로 발생하거나 부과된 벌금, 비용,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해 당사에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상환(요청 즉시)해야 합니다.

미국발/미국행 비행의 경우, 해당 국가 규정이 적용되어 제 8.10 조에 명시된 요건을 전체 또는 일부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에 문의하시거나 http://www.emirates.com/us/english/plan_book/essential_information/special_needs.aspx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9 조 - 스케줄, 지연, 항공편 취소, 탑승 거부

9.1 스케줄

9.1.1 당사의 시간표에 표시된 비행 시각 및 비행 시간은 출판일(발행일)과 고객의 실제 여행일 사이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비행 시각 및 비행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은 당사와의 운송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1.2 당사가 예약을 접수하기 전에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는 항공편 출발 시간을 알려 드리며 이는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 영수증/확인증에 표시됩니다. 당사는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 영수증/확인증이 발행된 후 항공편의 출발시각 및/또는 출발 또는 도착 공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고객에게 당해 변경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고객이 변경 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대체 항공기에 원래 예약한 서비스 등급과 동일한 유형의 좌석을 당사에서 예약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제 10.2 조에 따라 비자발적인 환불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2 취소, 경로 재지정 및 지연 발생 시 구제책

9.2.1 때때로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악천후 또는 항공 교통 통제 지연 또는 파업)으로 인해 출발 시간 및 항공기가 도착지까지 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 및 수하물을 운송함에 있어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타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대체 항공기를 사용하거나 대체 항공사가 당사를 대신해 운영할 항공편 알선 또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9.2.2 당사가 비행편을 취소하거나 스케줄에 따라 타당하게 비행편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도착지나 도중 체류지에 멈추지 못하거나, 전 구간을 예약하고 예약을 확인했으며 항공편 도착 예정 시간 후에 항공기를 갈아탈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당사 또는 타 항공사와의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만든 경우, 고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제책 중 하나를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고객이 선택하는 이 세 가지 구제책은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며 아래 제 9.2.2(a)항~(c)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 권리와 당사의 책임에 대한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9.2.3 조를 참조하십시오.

9.2.2(a) 구제책 1 - 당사는 좌석이 있는 당사의 다른 항공편으로 가능한 한 빨리 고객과 고객의 수하물을 운송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운송을 이행하기 위해 고객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9.2.2(b) 구제책 2 - 당사는 당사의 다른 항공편이나 타 항공사의 항공편, 또는 상호 협의된 다른 수단 및 운송 등급으로 고객의 항공권에 표시된 도착지까지 타당한 기간 내에 고객과 수하물 노선을 변경합니다. 또한 당사는 운송에 이미 지불된 운임, 세금, 수수료, 비용 및 할증료보다 변경된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 세금, 수수료, 비용 및 할증료가 더 낮으면 차액을 환불합니다.

9.2.2(c) 구제책 3 - 당사는 제 10.2 조에 따라 고객에게 비자발적 환불을 해 드립니다.

9.2.3 제 9.2.2(a)항~9.2.2(c)항의 세 가지 구제책은 제 15.6 조에 의거한 고객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9.2.2 조에 열거된 세가지 중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운송이 영향을 받는 경우 당해 구제책 및 권리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독적이고 배타적인 구제책 및 권리입니다.

9.3 탑승 거부

9.3.1 고객이 항공편 예약을 확인하고 적용되는 모든 체크인 및 탑승 마감 시한을 지켰으나, 당사가 고객이 원래 예약한 서비스 등급으로, 고객을 운송할 수 없는 경우,;

9.3.1(a) 당사는 이후 항공편 중 원래 예약한 서비스 등급으로 고객을 운송합니다. 또는 고객 선택에 따라, 당사는 당사의 다른 항공편 중, 다른 서비스 등급으로 고객을 운송합니다. 원래

예약된 서비스 등급보다 강등되는 경우, 당사는 이미 지불된 운임, 세금, 수수료, 비용 및 할증료와 실제 운송된 서비스 등급의 운임, 세금, 수수료, 비용 및 할증료의 차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또는,

9.3.1(b)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당사는 고객의 본래 도착 예정 시간의 합리적인 시간 범위 내에 고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른 항공사 이용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체 항공편의 운항과 절차 전반에 대해 해당 운항사의 운송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당사의 운송약관이 지속 적용됩니다.

대안으로, 고객은 제 10.2 조에 따라 비자발적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운송약관에서 허용되는 사유로 당사가 고객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 9.3.1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6.4 조, 7 조, 8.6.1 조, 11.4.2 조, 11.4.3 조, 13.1.6 조 및 13.6 조도 참조하십시오.)

9.3.2 제 9.3.1 조가 고객에게 적용되는 경우 당사는 적용되는 법규 및 당사 탑승 거절 보상 정책에 의거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는 보상액을 고객에게 지불합니다.

9.3.3 제 9.3 조에 의거한 고객의 권리와는 별도로 당사는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탑승 거부 보상 정책에 대해서는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제 10 조 - 환불

10.1 당사는 운임 규정 및 태리프, 아래의 추가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요금, 비용 및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할증료와 함께 항공권 또는 그 미사용된 부분에 대해 지불된 운임을 환불합니다.

10.1.1 당사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항공권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환불합니다. 단, 신원 및 지불 증빙을 당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10.1.2 환불 요청이 분실된 항공권과 관련되지 않는 한, 고객이 항공권과 모든 미사용된 항공편 쿠폰, 여객 쿠폰을 당사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사는 환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전자 항공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2 비자발적 환불

10.2.1 당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스케줄에 따라 타당하게 항공편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고객이 예약을 확인하고 해당 체크인 및 탑승 마감 시한을 충족하였고 본 운송약관에서 허용된 사유로 운송이 거부되지 않은 경우 제 10.2.1(a) 및 10.2.1(b)에 따라 운임 환불액이 계산됩니다. 당사가 도착지나 도중 체류지에 멈추지 못하거나, 예약이 확인된 상태에서 원래 예정된 항공편의 도착 시간과 연결 항공편의 출발 시간 사이에 고객이 항공기를 갈아탈 적정 시간이 있었지만 당사로 인해 연결 항공편을 놓치는 경우 동일한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환불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0.2.1(a) 항공권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지불된 요금과 동일한 금액(지불된 세금, 수수료, 요금 및 예외사항에 의한 할증료 포함). 또는

10.2.1(b) 항공권의 일부가 사용된 경우, 고객이 항공권을 사용한 지점 간 여행에 이미 지불된 금액(지불된 세금, 수수료, 요금 및 예외사항에 의한 할증료 포함)과 운송 실제 운임(지불된 세금, 수수료, 요금 및 예외사항에 의한 할증료 포함) 간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

10.2.2 운송이 거부된 항공편에 대한 환불 권리가 고객에게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7.1 조에 명시된 사유로 고객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는 제 10.2.1(b)에 따라 환불을 지불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2 조도 참조하십시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는 고객 항공권에서 미사용된 운송 금액을 사용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10.2.3 운송이 완료되기 전에 제 11.4 조(기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명시된 사유로 당사가 운송을 중단하는 경우, 당사는 제 10.2.1(b)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단,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 발생한 항공편에 대해 환불 권한이 없는 고객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4.4 조도 참조하십시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사는 고객 항공권에서 미사용된 운송 금액을 사용하여 당사에 지불할 금액 총액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10.3 자발적 환불

10.3.1 항공권에 대한 운임 환불이 제 10.2 조에 명시된 이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 환불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0.3.1(a) 항공권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지불된 운임(지불된 세금, 수수료, 요금 및 예외사항에 의한 할증료 포함)에서 적용되는 취소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고객 항공권이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또는

10.3.1(b) 항공권 일부가 사용된 경우, 고객이 항공권을 사용한 지정 간 여행에 이미 지불된 운임(지불된 세금, 수수료, 요금 및 예외사항에 의한 할증료 포함)과 실제 운임(세금, 수수료, 요금 및 예외사항에 의한 할증료 포함) 간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에서 고객 항공권이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소 수수료와 적용되는 행정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10.4 분실한 항공권에 대한 환불

10.4.1 고객이 항공권 또는 그 일부를 분실하여 당사에 해당 분실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고 적용되는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당사는 항공권 유효 기간 만료일 이후 또는 6 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두 시점 중 더 이후 시점) 환불합니다. 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0.4.1(a) 당사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또는 다른 사람에게)이 사용했거나 환불했거나 교체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분실된 항공권 또는 그 일부가 사용되거나 이전에 환불되거나 교체된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10.4.1(b) (당사와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비용을 상환 받는데 동의한 사람이 당사가 추후 사기임을 알거나 고객이나 다른 사람이 분실한 항공권(또는 그 일부)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환불된 금액을 당사에 상환하고 고객을 찾고 통지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소요된 법률 비용을 당사에 상환하기로 동의한 경우. 사기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사용이 당사의 부주의에 의한 결과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5 환불 거부 권리

10.5.1 환불 신청이 원래의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지난 경우 당사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10.5.2 당사는 고객이 특정 국가에 도착하여 향후 해당 국가를 떠나겠다는 의사에 대한 증빙으로서 항공권을 당사 또는 정부 직원에게 제시한 경우 당사는 항공권에 대해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이 해당 국가에 남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항공기 또는 다른 운송 수단을 통해 해당 국가를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당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0.5.3 정부 조직에 의해 "환불 불가능(Not to be Refunded)"이라는 스탬프가 찍혔거나, 정부 조직에 의해 "환불 불가능(Not to be Refunded)"이라는 스탬프가 찍혀있던 항공권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교체된 항공권인 경우 당사는 항공권에 대해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이 해당 정부 조직으로부터 환불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당사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0.5.4 당사는 고객 운송이 거부되었거나(제 7.1 조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에 의거) 하기(下機) 조치(제 11.1~11.3 조에 명시된 사유 중 하나에 의거)된 항공편의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10.6 화폐

당사는 고객이 항공권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 같은 형식 및 화폐로 환불합니다.

10.7 항공권 환불의 주체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가 항공권을 발행한 경우에만 항공권에 대한 자발적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10.8 고객의 권리에 대한 제한

본 운송약관에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로든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 10 조에 명시된 환불 권리는 고객이 당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이는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여타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 11 조 - 기내 탑승 시 품행

11.1 일반 사항

고객은 여행 중 언제나 아래와 같지 않은 태도로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11.1.1 항공기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국가나 지역법에 위배되는 행동

11.1.2 항공기나, 타인 또는 자산에 위험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동(항공기 납치 등)

11.1.3 탑승 중인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상해 또는 건강에 해가 되는 위험이나 위협을 야기하는 행동

11.1.4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또는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행동으로 탑승 중인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현저한 혐오감으로 유발하거나 불만이 제기되는 행동

11.1.5 기내에서 당사 자산 또는 탑승 중인 타인 자산에 대한 분실이나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행동

11.1.6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저지 또는 간섭하는 행동

11.1.7 항공기, 사람이나 자산의 안전 또는 보안 및/또는 안전, 보안, 착석, 좌석 벨트, 흡연, 알코올 섭취 또는 약물 사용, 전자 장비(휴대 전화, 노트북, PDA,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CD, DVD, MP3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또는 무선 조종 장난감 및 무전기 등의 전송

장치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사용에 대한 지침 등 여객의 편의나 편리상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발령된 승무원이나 항공기의 지시사항이나 지침(구두나 공지 무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 11.1 조 적용에 대한 당사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 18 조도 참조하십시오.

11.2 기내 알코올

당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은 기내에서 알코올을 마실 수 없습니다(당사 또는 다른 출처의 면세 구매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 여부에 무관함). 당사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든 언제라도 알코올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미 제공된 알코올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11.3 금연 정책

흡연은 당사의 어느 항공편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1.4 의무의 위반

고객이 제 11.1 조~11.3 조에 의해 고객에게 부과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11.4.1 당사는 해당 건을 관련 경찰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4.2 당사는 위반 행동이 지속 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구속 및/또는 하기 조치 및/또는 도중 체류지 이후 고객 운송 거절(하기 목적이나 다른 목적 여부에 무관)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4.3 당사는 향후 언제라도 고객의 운송 거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4.4 고객은 (a) 고객에 의해 분실, 손상 또는 파손된 자산의 수리 또는 교체 (b) 고객 행동에 영향을 받은 여객이나 승무원에 보상 (c) 고객의 하기를 목적으로 항공기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당사에 배상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 항공권 중 미사용된 운송 금액이나 당사가 소지하고 있는 고객 자금을 사용하여 고객이 당사에 지불할 금액 총액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 12 조 - 제 3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12.1 당사가 외부 업체를 통해 승객에게 지상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예: 리무진, 지상 교통, 호텔 예약이나 숙박 또는 자동차 렌트 등)를 제공하거나, 당사가 승객에게 그러한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에 관련된 티켓이나 이용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그러한 서비스의 주선과 티켓 또는 이용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 단지 승객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이용 약관이 승객에게 적용됩니다.

12.2 당사는 당사의 부주의만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업체에서 제공하도록 당사가 고객을 위해 알선한 지상 운송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에 관해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 7.8 조 및 7.9 조를 참조하십시오.

제 13 조 - 여행 서류, 세관 및 보안 검사

13.1 일반 사항

13.1.1 고객은 방문 중인 모든 국가에 대해 필요한 모든 여행 문서를 획득하고 소지할 책임이 있습니다(환승 여객도 해당).

13.1.2 고객은 출국, 입국 또는 여행 중 환승할 모든 국가의 모든 법규, 규정, 명령 및 기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3.1.3 필요한 여행 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 당사는 예약 전 및 예약 시점에 모든 관련 국가의 대사관, 영사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문의하도록 고객에게 권고합니다. 즉시 여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여행 개시 전에 고객의 해당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여행 문서가 모든 항공편, 목적지 및 계획된 도중 체류지에서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동 기관에 다시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고객에게 권고합니다.

13.1.4 요청받은 경우, 고객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여권, 사증, 건강 증명서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문서를 당사에 제시하고 당해 문서의 사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영수증을 받고 당해 문서를 기내 승무원에게 위탁하여 여행 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사는 운송 전이나 도중 언제라도 당해 문서를 당사에 제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3.1.5 당사는 고객이 여행에 필요한 모든 여권, 비자, 건강 증명서 및 기타 여행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문서 중 하나라도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출국, 입국, 여행 중 환승할 모든 국가의 법규, 규정, 명령 및 기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1.6 당사는 고객의 사증이나 여행 문서가 유효하게 보이지 않거나, 제 13.1 조의 기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객 또는 수하물 운송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제 13.1 조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당사에서 확실히 알기 전에(제 13.1.4 조의 운영 결과 또는 다른 사유 여부에 무관) 운송을 일부 시작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완료한 경우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3.2 입국 거절

고객이 특정 국가로의 입국이 거부(도착지로 향하는 경로 중에 고객이 환승하는 국가 포함)된 경우, 고객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되는 운송료 및 에스코트 요금(있는 경우)은 물론 관련된 정부에 의해 부과된 벌금 또는 비용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공항까지의 운송에 대해 지불된 운임을 고객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13.3 벌금, 구류 비용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여객 책임

고객이 여행한 국가의 법률, 규정, 규칙 또는 기타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입국 요청에 필요한 여행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위약금, 구류 비용, 추방이나 이송 비용, 에스코트 비용(있는 경우), 항공권 발행비 또는 기타 비용을 요청받을 시 고객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당사는 항공권에서 미사용된 운송 금액 또는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고객 자금을 사용하여 고객이 당사에 지불할 금액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13.4 압수된 여행 서류 반환

당사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압수된 고객의 여행 문서, 신원 확인 문서 또는 항공권의 반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5 세관 검사

필요 시 고객은 세관 또는 기타 정부 직원에 의한 수하물 검사 시 참석해야 합니다. 당사는 당해 검사 과정 중 겪게 된 손해나 고객의 불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3.6 보안 검사

고객은 당사, 당사의 운용 요원, 정부 직원, 공항 직원, 경찰 또는 군인 및 고객 운송과 관련된 기타 항공사가 고객에 대해 보안 검사, 검색 및 검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객이 당해 모든 보안 검사, 검색 및 검문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고객 및 수하물 수송을 거부합니다.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사에 대해서는 제 8.6 조도 참조하십시오.

제 14 조 - 연결 항공사

고객 운송이 단일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으로 당사 및 타 항공사에 의해 연속 수행되는 경우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의 취지에 따라 단일 수송으로 간주됩니다. 당해 운송에 대한 당사의 책임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15.2 조를 참조하십시오.

제 15 조 - 손해 배상

15.1 해당 규정

당사의 책임은 해당 법규 및 본 운송약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타 항공사가 고객 여행에 연관된 경우, 그 책임은 본 운송약관이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해당 법규 및 해당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해 규정됩니다. 해당 법규는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및/또는 개별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은 해당 협약에 정의된 대로 국제 운송에 적용됩니다. 당사 책임에 관한 조항은 제 15.2~15.6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5.2 책임의 범위

당사는 당사에 의한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고객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타 항공사에 의한 운송에 대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타 항공사에 의해 운송되는 고객의 수하물을 당사가 체크인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대행사 역할만을 합니다.

15.3 일반적 제한

15.3.1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고객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당사 책임은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 및 제한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15.3.2 당사가 고객의 부주의나 기타 부당한 행동 또는 태만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거나 이것이 원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손해에 대한.

15.3.3 손해가 당사의 부주의의 결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 3 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당사가 특정 조치를 취하였거나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당사가 증명하는 경우 당사는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15.3.4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가 해당 국가 법률 또는 정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고객이 동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3.5 당사가 본 운송약관에서 달리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나 적용되는 해당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검증된 손해 및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배상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15.3.6 당사와 고객 간의 운송 계약(본 운송약관 및 모든 적용되는 책임의 배제 및 제한 포함)은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 직원 및 대리인을 위해 당사에 적용되는 동일한 범위까지 적용됩니다. 그 결과,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받은 대행사, 직원 및 대리인으로부터 보상 가능한 총액은 당사 고유의 책임(있는 경우)을 넘지 않습니다.

15.3.7 본 운송약관의 내용 중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도 다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15.3.7(a) 당사에서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한,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또는 적용되는 해당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의 책임 배제 또는 제한 사항을 포기 또는 철회하게 하는 행위. 또는

15.3.7(b) 당사에서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하지 않는 한,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또는 적용되는 지역 법규 또는 적용되는 여타 법규에 의거하여, 당사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공공 사회 보장 기관에 대해, 또는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사람(또는 이미 지불한 사람)에게 활용 가능한 방어 조치를 포기하는 행위.

15.4 여객 사망 또는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의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적용되는 법규 규정 및 제한은 물론, 다음 추가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15.4.1 검증된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법규, 바르샤바 협약 등에 따른 재정적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5.4.2 해당 국가 통화 가치로 최대 100,000 SDR(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가 통화 가치로 113,100 SDR)에 해당하는 손해가 입증된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대행사가 해당 손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 또는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항변은 당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5.4.3 당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고객 또는 고객의 피상속인에게 선지불하는 데 동의합니다.

15.4.3(a) 지불받는 사람은 자연인일 것(즉, 가공의 인물이나 회사에 반대되는 상식적인 어휘에서의 사람)

15.4.3(b) 고객 또는 지불받는 사람이 해당 법규에 의거한 보상액 수령 권한이 있을 것

15.4.3(c)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와 관련해서만 지불이 이행될 것

15.4.3(d) 지불 금액은 사망, 부상 또는 신체적 상해의 결과로서 겪는 경제적 고통에 비례함. 사망의 경우 해당 국가 통화 가치로 여객당 최소 15,000 SDR 입니다.

15.4.3(e) 해당 법규에 따라 설정된 보상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후 15 일 이내에 지불될 것입니다.

15.4.3(f) 지불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여객이 본인의 부주의로 지불과 관련된 손해를 유발하거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어느 누구도 지불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15.4.3(g) 수취인이 제 15.4.3(b)항을 준수 또는 충족하지 못했거나 지불과 관련된 사람 또는 여객이 지불과 관련된 손해를 유발했거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해당 지불을 다시 당사에 반환한다는 조건 하에 모든 지불이 진행됩니다.

15.4.3(h) 해당 법규에 의거한 당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지불 의무가 있는 이후의 총액과 지불을 상계합니다.

15.4.3(i) 사망과 관련하여 제 15.4.3(d)항에 명시된 최소 총액의 지불을 제외하고, 지불액은 당사가 수취인에 지불 의무가 있는 최대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5.4.3(j) 지불 이행이 당사의 책임을 인정 또는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15.4.3(k) 지불을 수령하는 사람이 제 15.4.3(g)항, (h)항 및 (j)항의 적절성을 인정하는, 서명된 영수증을 당사에 제출하지 않는 한 지불은 이행되지 않습니다.

15.4.3(l) 해당 법규와 상충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사망에 대해 제 15.4.3(d)항에 명시된 최소 금액의 지불을 조건으로 하여, 지불 금액과 관련한 당사 결정이 종결될 것입니다.

15.5 수하물

15.5.1 당사가 부주의로 손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당사는 비위탁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5.2 당사는 수하물 고유의 하자, 품질 또는 결함의 결과로 인한 수하물 손해(예: 파손되기 쉽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 및 제 8.3 조 및 8.4 조에 따라 수하물에 포함할 수 없는 기타 품목의 파손 또는 그를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유발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사는 항공에 의한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획득한 항공 수송 환경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수하물이 마모되고 찢기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항공 수송 수하물의 적합성에 관한 제 8.7.6 조 참조).

15.5.3 손해를 유발할 의사를 가지고, 또는 무모하게, 또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당사가 행동했거나 누락해서 손해가 발생했음을 고객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하물의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제 15.5.4 (a)항 ~ (e)항에 명시된 최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고객이 가치에 대한 특별 신고(제 15.5.5 조 참조)를 하거나 위탁 수하물 또는 비위탁 수하물의 실제 가치 또는 교환 가치가 당사의 책임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고객 스스로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15.5.4(a) 고객 운송에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가 통화 가치로 여객당 332 SDR(약 US\$400)이 비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적용됩니다.

15.5.4(b) 고객 운송에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가 통화 가치로 킬로그램당 17 SDR(약 US\$20) 또는 제 15.5.5 조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동의한 더 높은 금액이 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적용됩니다.

15.5.4(c) 고객 운송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가 통화 가치로 여객당 1,131 SDR(약 US\$1780) 또는 제 15.5.5 조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동의한 더 높은 금액이 비위탁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적용됩니다.

15.5.4(d)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대신, 해당 국가 법률이 고객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규에 의거한 비위탁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모두에 대한 손해 책임 한도가 수하물에 적용됩니다.

15.5.4(e) 고객 운송에 바르샤바 협약도 몬트리올 협약도 해당되지 않고 해당 국가 법률에 당사의 책임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 15.5.4(a) 및 (b)에 명시된 비위탁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모두에 대한 손해 책임 한도가 비위탁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각각 적용됩니다.

15.5.5 당사는 고객이 당사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체크인 시 위탁 수하물을 당사에 인계하는 시점에서 고객과 당사 간에 합의된 금액까지 당사의 책임분을 증액할 것입니다. 이를 "가치에 대한 특별 신고"라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15.5.6 위탁 수하물의 수하물 확인증에 중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당사는 해당 수하물이 고객이 예약한 운송 등급에서 허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추정합니다.

15.5.7 수하물 운송이 연결 항공사에 의해 수행되고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해당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당사가 해당 운송에 있어 최초 또는 마지막 항공사인 경우 당사에 의한 운송 중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은 당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5.6 여객 운송 지연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 및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제한됩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운송의 경우, 당사의 책임은 해당 국가 통화 가치로 4,694 SDR 까지 제한됩니다. 해당 협약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 운송약관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고객에게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7 국제선 여객에게 적용되는 책임 제한에 대한 고지

출발지가 아닌 다른 국가의 도중 체류지 또는 최종 목적지에 포함된 여행인 경우, 출발지 또는 도착지 내의 모든 구간을 포함하여 고객의 전체 여행에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수 있음이 고객에게 안내됩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사는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검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해당 협약에 의해 명시된 책임에 대한 특정 방어 조치는 해당 국가 통화 가치로 113,100 SDR 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여러 항공사(전 항의 제 15.4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에미레이트 포함)의 운송약관에는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은 바르샤바 협약에 의해 정의된 재정적 책임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 통화 가치로 최대 100,000 SDR 의 손해와 관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책임 방어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의 운송 약관에 그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i) 미국 내 합의된 지역을 출발/도착하거나 경유하는 승객의 경우 바르샤바 협약 및 해당 태리프에 포함된 특정 운송 계약에 규정된 대로,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특정 계약 당사자인 특정 항공사의 책임은 입증된 손상의 경우 대부분 승객당 미화 75,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고, 책임에 대한 이러한 제한은 항공사 측의 직무 태만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ii) 이러한 특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거나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내 합의된 지역을

출발/도착하거나 경유하지 않는 승객의 경우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대부분 미화 10,000 달러 또는 20,000 달러로 제한되며, (iii) 일부 국가에서는 위 (i) 및 (ii)에 명시된 한도보다 높게 부과됩니다.

위 (i) 항에 언급된 유형의 특정 계약의 당사자인 항공사의 이름은 해당 항공사의 모든 발권 사무소에서 제공되며 요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회사의 보험을 구입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 협약 또는 위의 (i)에서 언급된 유형의 특수 운송 계약에 의거한 항공사의 책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항공사 또는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 본 15.7 조의 위 (i) 항에 명시된 미화 75,000 달러의 책임 제한에는 법적 수수료와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적 수수료 및 비용의 별도 지급 조항을 규정하는 국가에서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법적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고 총 미화 58,000 달러로 제한됩니다.

제 16 조 - 수하물 인수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 수하물 인수 절차 및 모든 손해 소송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

16.1 수하물 인수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

16.1.1 고객 또는 고객 권한에 의해 수하물 확인증 및 수하물 식별 태그를 소지한 사람이 불만 없이 위탁 수하물을 수령하는 경우 고객이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불만 없이 수령했다는 것은 위탁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16.1.2 고객이 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해 보상액을 당사에게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16.1.2(a) 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해가 물리적인 성격인 경우 고객은 위탁 수하물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16.1.2(b) 위탁 수하물 전체 또는 일부의 분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 고객은 위탁 수하물이 도착한 날짜나 도착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16.1.2(c) 위탁 수하물의 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수하물이 고객에게 도착한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16.2 수하물 인수 절차

16.2.1 수하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시, 종류, 제조자 및 사용한 연도별로 해당 각 품목을 식별할 수 있는 항목화된 목록과 함께 당해 모든 품목의 구매 증명서 또는 소유 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화 5 달러(또는 해당 국가 통화 가치) 미만 또는 사용한지 5년이 넘고 청구 금액이 미화 50 달러(또는 해당 국가 통화 가치)가 되지 않는 품목에는 구매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16.2.2 수하물에 대한 물리적 손상에 관한 보상 청구의 경우 고객은 해당 수하물을 보유해야 하고, 당사에서 요청하면 당사가 그 피해의 성질, 범위 및 복구성 평가를 위해 해당 수하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16.2.3 피해 수하물 손해 배상에 대한 청구에 포함된 개별 품목의 교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그러한 비용이 발생되기 전에 당사에 문의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은 지불 의무가 있는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체 품목의 총 비용이 미화 50 달러 또는 해당 국가 통화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청구 시 모든 교체 품목의 구매 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매 증명서는 비용이 미화 5 달러(또는 해당 국가 통화 가치) 미만인 품목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16.2.4 수하물 관련 보상에 대한 모든 청구에 대하여, 고객은 보상 청구의 적격성 및 지불 의무가 있는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당사가 요청하는 여하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16.2.5 당사에서 요청 시, 고객은 당사가 보상액을 지불하기 전 수하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사실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16.2.6 고객이 제 16.2 조의 관련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면 고객이 권한을 가진 보상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6.3 모든 손해 소송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

도착지 도착일 또는 항공기 도착 예정일 또는 운송이 중단된 날짜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모든 손해 배상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 17 조 - 당사 규정

고객 운송의 일부 측면은 본 운송약관은 물론, 당사 규정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경우 고객은 당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본 운송약관의 내용이 당사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제 2.4 조를 참조하십시오.) 당사에는 동반인이 없는 어린이, 임산부, 지체 부자유 여객, 아픈 여객, 동물 운송(도우미 동물 포함), 기내에서의 전자 기기 사용에 관한 제한, 수하물 금지 품목 및 수하물 크기 및 중량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 규정은 요청 시 제공해 드립니다.

제 18 조 - 해석

18.1 당사는 제 7.1 조(당사의 운송 거부 권리) 및 제 11.1.1 조(기내에서의 고객 품행)의 목적에 따라 해당 법규, 규정, 명령 또는 정부 정책 등의 해석과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합니다.

때때로 시간 제약이 있고 충분한 문의를 수행할 적절한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당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가 내리는 결정은 이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더라도 최종적이며 고객에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단, 당사가 결정을 내린 시점에 그것이 정확하다고 믿은 것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18.2 본 운송약관에서 고객이 해당 법규 또는 해당 정부, ICAO 또는 IATA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고객은 항상 그리고 운송 당일이나 운송일 중에는 특히 해당 법규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8.3 본 운송약관에 언급된 모든 날짜와 기간은 그레고리력에 따라 확정됩니다.

18.4 본 운송약관의 각 조항 제목은 편의상의 목적에 따른 것이며 문헌 해석 용도는 아닙니다.